

서울남부지방법원

제 1 2 민 사 부

판 결

사 건 2020가합110725 부당이득금반환
원 고 주식회사 A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푸른
담당변호사 홍성용
피 고 대한민국
변 론 종 결 2020. 11. 17.
판 결 선 고 2020. 12. 15.

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피고는 원고에게 254,601,342원 및 이에 대하여 2020. 3. 27.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 연 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[illegible]

	소액)	세)	세)	선순위)	자부)	자부)	자부)	자부)	자부)	자부)	해)
배당액	27,000, 000	525,990	6,246,6 60	804,753 ,444	150,000 ,000	130,000 ,000	130,000 ,000	140,000 ,000	200,000 ,000	80,000, 000	1,192,2 64,842
배당비율	100%	100%	100%	100%	100%	100%	100%	100%	100%	100%	74.66%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7호증(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, 이하 같다)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원고의 주장

이 사건 교부청구 중 15건 합계 1,589,276,780원에 해당하는 금액은 B가 납세자인 주식회사 Q(이하 'Q'이라 한다)의 제2차 납세의무자임을 근거로 한 것인데, B와 특수관계인인 R의 소유주식 및 합계 및 주당액면가액 합계는 소외 Q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합계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다.

피고의 채권은 7,636,230원을 초과하여 인정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 배당액 중 1,184,628,612원은 법률상 원인 없이 배당된 것이다.

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 반환으로 254,601,34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3. 판단

가. 관련법리

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는 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로, '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'을 규정하고 있고,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및 제18조의2는 '친족관계, 경제적 연관관계 등'의

관계에 있는 자를 특수관계인으로 규정하고 있다.

여기에서 주식에 대한 권리 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,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(대법원 2008. 9. 11. 선고 2008두983 판결 등 참조).

한편, 위 법조항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,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,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,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,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를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,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(대법원 2004. 7. 9.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).

나. 판단

갑 제8,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, Q의 주식 총수 20,000주(주당 액면가액 5,000원)에 대하여 B가 6,000주(30%), R 4,000주(20%), S, T 각 5,000주(25%)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 사실, Q의 2017. 6. 25., 2018. 4. 23. 각 주주명부에 Q의 주식 총수 40,000주에 대하여 B가 12,000주(30%), R 8,000주(20%), S, T 각 10,000주(25%)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.

그러나 앞서 든 증거,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

S, T, R는 2015년 경 위 각 주식의 명의만 본인으로 되어 있고, 실제의 주식 권리는 B에게 있다는 확인을 한 사실, B는 2016. 8. 2.경 Q의 실제 대표이사로 2006. 4. 25. Q의 주식 100%를 실제로 보유하고 있음에도 S, T, R 차명으로 분산하여 보유하고 있다고 진술한 사실, 피고(성남세무서)는 2016. 10. 21. Q의 체납액에 대하여 B의 출자비율을 100%로 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는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조사서를 작성하고, 이후 B에게 Q이 체납한 부가가치세, 법인세, 기타소득세, 근로소득세 등의 납부통지를 한 사실, 피고는 위 세금을 포함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.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B는 2006. 4. 25.경부터 Q의 주식 100%에 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음이 인정되고, 이에 의하여 B가 그 소유지분인 100%에 대하여 Q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되는 이상 피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금원이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이라고 보기 어렵다.

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의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.

4. 결 론

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.

재판장 판사 김선일

 판사 정진우

판사 장유진